

회 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이회는 한국과학사학회(The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)라 부른다.

제 2 조 이회는 과학사를 연구, 보급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이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2 장 사 업

제 4 조 이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연구발표회, 토론회, 계몽강연회 개최
2. 회지 및 단행본 발간
3. 국내외 관계학회와의 교류
4. 회원친목회 개최
5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 3 장 회 원

제 5 조 이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 1. 정회원은 과학사를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로서 회원 2인의 추천을 얻고 평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입회한다.

2. 명예회원은 이회에 기여한 바 큰 이로서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된다.
3. 학생회원은 과학사에 관심있는 대학생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회한다.

제 7 조 1.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회지를 받으며 투표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
2. 명예회원은 회지를 받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.
3. 학생회원은 회비를 내고 회지를 받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.

제 3 장 임 원

제 8 조 이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-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 2인-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.
3. 감사 1인-회무를 감사한다.
4. 평의원 약간명-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5. 간사 약간명-회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 9 조 정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 및 간사는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0 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2 조 이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연다. 평의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은 임시

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3조 평의회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.

제14조 모든 회의는 재적 1/8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재석 과반수로 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재 정

제15조 이 회의 경비는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6조 이 회의 회비의 액수는 평의회회에서 결정한다.

제17조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총회로부터 이듬해 총회까지로 한다.

제18조 이 회의 예산, 결산은 평의회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심의 또는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장

제19조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재석 4/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.

제20조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(1976. 12. 10 개정)